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3. 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9.8. 신종갑 의원 외 13명

나. 회부일자: 2022.9.14.

다. 상정일자: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9.2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신종갑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1) 제명 변경

- 기존: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

- 변경: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

2)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조 ~ 제2조)

- 3) 적용범위에 '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'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4)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및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 ~ 제6조)
- 5) 종전의 (제4조)의 제목 "(공개)"를 "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"로 변경하고,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'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'로 명시(안 제7조)
- 6)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 ~ 제13조)
- 7) 용역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4조 ~ 제18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종갑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 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 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기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로 변경하고

- (안 제1조 ~ 제2조)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 ▲(안 제3조)에는 적용범위에 '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'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 ▲(안 제4조 ~ 제6조)에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및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▲(안 제7조)에는 종전의 (제4조)의 제목 "(공개)"를 "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"로 변경하고,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'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'로 명시 ▲(안 제8조 ~ 제13조)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▲ (안 제14조 ~ 제18조)에는 용역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내용임.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. 9. 13. ~ 2022. 9. 19.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중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(2022. 9. 19. 제출)로부터 공개·관리 대상 정책연구용역 범위확대,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시점을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2개월 이내로 제한, 위원회의 관리·감독 역할과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, 정책연구용역 평가기준과 원칙, 절차에 대한 명시 규정을 제안하는 의견제출을 받았음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연구용역의 추진계획 및 결과물 공개 시점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」 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- 기존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래」는 제4조(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공개)만이 제정되어 연구 과제 선정의 자율성이 부 여됐지만,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과제 선정의 중복 여부 및 유사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개정을 통해 필요한 대상 과제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,
 - 최근 4년(19년~22년 현재) 12억 1천 8백만 원의 금액이 정책연 구용역 발주 금액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진행상황의 점검 및 심의위원회의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므로,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를 설치하고, 정책용역비 책정과 연구용역 방식의 조정 그리고 타 당성, 유사성, 중복성 등을 검토해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게 할 예 정이며, 용역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활용 사항을 점검하여 정책 연구용역의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론요지: 없 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8. 기 타
 - 가. 입법예고안 의견제출
 - 제출일자 : 2022. 9. 19.(월)

- 제 출 자 : 정의당 마포구위원회(대표자: 위원장 오현주)
- 찬반여부 : 개정반대
- 반대사유 및 기타 참조사항
 - (제3조 제5호)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연구용역의 예외 사례 삭제
 - (제7조 제1항) 연구결과물의 공개시점을 현행 규정(지체없이)대로 유지 또는 2개월로 변경할 것을 제안
 - 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) 위원회가 마포구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게 되면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. 정책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실무적 합리성 및 타당성을 보완 할 수 있는 규정 미련 제안
 - (정책연구용역심의의 보편적 기준과 원칙) 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평가, 공개, 활용상황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, 심의기준 및 원칙 등이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보충할 것을 제안

나. 검토결과

- 의견제출 반영 여부 : 미반영
- 검토의견
 - 동 조례의 적용범위 예외사례인 비공개 항목(5개)과 연구용역 결과 물의 공개시한 명시(3개월 이내) 등의 규정은 조례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운영실태를 고려해 개정해야 할 것임.
 - 또한 신설된 '마포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'의 사전 심의를 통해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, 유사·중복과제의 연구용역 반복 수행 등의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- 다만 연구의 자율성 침해 및 1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 남발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반영

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임.

- 아울러 위원회가 연구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을 심의할 경우 필요한 보편적 심의기준과 원칙 등은 추후 운영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하여 동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제49조(정책연구)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(이하 "연구자"라 한다)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50조(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(이하 "정책연구"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(이하 이 절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2.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 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·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 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51조(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
1.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

- 2.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,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- 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
- 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
- 3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

제52조(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,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3조(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54조(정책연구의 공개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
- 2.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
- 3.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
- 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

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5조(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,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, 기획재 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56조(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)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
- 2. 「학술진흥법」에 따른 학술연구
- 3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·연구
- 4. 기술·전산·임상 연구,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
- 5.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 · 연구
- 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

[별표 2]

정책연구용역발주내역(2019년~2022년현재)

(단위 : 원)

연번	연구 용역명	계약금액	발주부서
1	마 포 구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수 립 연 구 용 역	21,945,000	아동청년과
2	마포구 여성정책 인식조사 연구용역	36,887,000	여성가족과
3	협 치 회 의분 과구 성및협 치 조 례개 정연 구용 역	7,000,000	마포1번가연구단
4	마 포 복 지 재 단설 립 관 련타 당 성조 사연 구 용 역	20,900,000	복지정책과
5	마포구 디자인 출판 스마트앵커시설 기 본 계 획 수 립 을 위 한 연 구 용 역	22,000,000	도시계획과
6	젠 트 리 피 케 이 션 방 지 방 안 학 술 연 구 용 역	77,440,000	일자리경제과
7	관 광 사 업활 성 화 를위 한빅 데 이 터분 석연 구 용 역	92,400,000	전산정보과
8	아 동 친 화 조 성 을 위 한 연 구 용 역	49,500,000	가정복지과
9	마 포 도 시 문 제 해 결 포 럼 지 역 조 사 연 구 용 역	20,000,000	마포1번가연구단
10	마 포 홍 대 관 광 특 구 지 정 및 진 흥 계 획 수 립 연 구 용 역	38,644,690	관광과
11	마 포 고 령 친 화 도 시 조 성 연 구 용 역	46,000,000	노인장애인과
12	마포구 주거지 유형별 근린환경의 인지건강디자인 진단 연구 용역	2,000,000	마포1번가연구단
13	마 포 구	35,218,000	지역경제과
14	상 호 이 해 를 통 한 공 존 과 상생의 길 찾기 대화 연구 용역	10,000,000	마포1번가연구단
15	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조사 연구용역	20,000,000	마포1번가연구단
16	제 2 차 마포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 부 시 행 계 획 수 립 연구 용 역	21,340,000	환경과
17	마 포 구 문 화 예 술 중 장 기 발 전 방 안 연 구 용 역	76,000,000	문화예술과
18	제 5 기 (2 0 2 3 ~ 2 0 2 6)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연구 용 역	49,884,000	복지정책과

연번	연구 용역명	계약금액	발주부서
19	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	40,909,090	여성가족과
20	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기 후 변 화 대 응 계 획 수 립 연 구 용 역	90,000,000	환경과
21	운 동 을 통 한 치 매 예 방 사 업 운 영 및 연 구 용 역	234,300,000	생활체육과
22	마포유수지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 사업계획 변경 연구용역	30,900,000	문화예술과
23	쓰레기 무단투기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생활실험실 지원 연구 용역	19,998,790	마포1번가연구단
24	마 포 구 2 기 지 역 사 회 혁 신 계 획 수 립 을 위 한 지역 조 사 연 구 용 역	21,340,000	마포1번가연구단
25	마 포 구 보 인 복 지 정 책 에 대 한 여 론 조 사 용 역	15,550,000	노인장애인과
26	2021 마포구 사회조사 용역	99,000,000	기획예산과
27	2019 마포구 사회조사 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용역	17,000,000	기획예산과
28	마 포 구 협 치 의 제 온 라 인 공 론 장 운 영 관 련 구 민 여 론 조 사 용 역	2,200,000	마포1번가연구단
총 액		1,218,356,570	